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9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 문진석·황운하·이건태

서영석 • 윤종군 • 김동아

조인철 • 문정복 • 이연희

김기표 · 김태선 · 이상식

안호영 · 정진욱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종사자가 타인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를 받은 자 또한 타인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각종 경제지표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 빈부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 쪽 격차가 심각하여 계층간 반목과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한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확한 자산상황이나 불평등 수준 파악이 필요하지만 금융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금지된 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계청 국가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법과 「통계법」 간 일치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국세청 등에서 제공받은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정 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법률 제 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 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2.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청장이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여 요구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 ~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 | 4 |
| 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 | |
| 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 | |
| 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 | |
|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 | |
|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 | |
| 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 | |
| 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 |
|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 | |
| 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 | |
|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 |
|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 |
|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 |
|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 | |
| 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 | |
| 게 된 자에게 거짓 또는 그 밖 | |
| 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 |
|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 |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 | <u>다음</u> |
| 응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 |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 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 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 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신_ 설>

<신 설>

⑤ · ⑥ (생 략)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2. 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는 경우
-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청장이 대상및 범위를 명시하여 요구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한행과 같음)